

	<b>보 도 자 료</b>				
		<b>보도</b>	<b>2022.1.7.(금) 조간</b>		<b>배포</b>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<b>담 당 자</b>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21)		
	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윤 세 영 팀 장 (02-3145-7154)		

**제 목 :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를 위해  
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**  
**[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]**

- ◆ **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**
- ① **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** →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**창업·중소기업** 등의 **데이터 결합 접근성 제고**
  - ② **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** → 보다 **효율적인 데이터 결합**을 지원
  - ③ **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** → **안전하고 편리한 자가결합**이 가능
  - ④ **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** → **데이터 결합준비 편의성**을 제고

## 1 개요

-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,
  - 그간 발표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\*을 법제화하는 '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'을 입법예고합니다.
    - \* 「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·활용 가속화 보도자료(‘21.5.27일)」, 「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(‘21.7.28일)」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
- 동 법령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,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## 2 법령 주요 개정내용

### (가)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

####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(영 § 14의2, 규정 § 15의2)

○ **(현행)**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,

-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·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\* 예: A핀테크업체(데이터 보유기관)의 고객 결제·송금정보와 B은행(데이터 보유기관)의 여·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(데이터 이용기관)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, B가 하여야 함

○ **(개선)**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\*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.

\*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약이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

- 이에 따라,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,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.

※ **개보법**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**既 허용**

#### < 데이터 이용기관(데이터 미보유)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·후 비교 >



## 2 샘플링 결합\* 절차 도입(영 § 14의2, 규정 § 15의2)

\*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(예: 5%)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

- (현행)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\*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.

\*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

- 이에,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·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\*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

\* 예)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%만 샘플링하여 결합·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

- (개선)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'샘플링 결합'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-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,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\*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.

\*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(§32⑥9의3.)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

### < 샘플링 결합 절차 >



### ③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(규정 § 15의2)

- **(현행)**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<sup>i)</sup>할 경우 데이터 오·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<sup>ii)</sup>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.

\* i)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 
ii)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,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

-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(개방)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

※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: ①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, ②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, ③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

- **(개선)**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 ④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(규정 § 28의3)

- **(현행)**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,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.

\* 현재는 고의·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

- **(개선)**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(3년)을 부여하여,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.

\*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

※ 개보법은 시행령(§29의2④)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既 규정

## 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(규정 별표7)

- **(현행)**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,
  -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\*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
- \* 임원 적격성 요건, 재정능력(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) 요건 등
- **(개선)** 임원 적격성 요건,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\*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,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,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

## (나) 기타 개정사항

###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(규정 별표6)

- **(현행)**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,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.
  - 이에,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- **(개선)**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.

###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(영 § 30의3)

- **(현행)**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를 신정원,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(서면, 전화, 이메일, 문자 중 택1)가 필요합니다.
  -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, 통지방법도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
- **(개선)**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, 통지방법도 확대(스마트폰 앱 등 가능) 하겠습니다.

### 3 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\* 주요 개정내용

\* 지난 '20.8월 금융회사등이 개정 신정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·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, 예시 등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

#### ◇ 「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」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 표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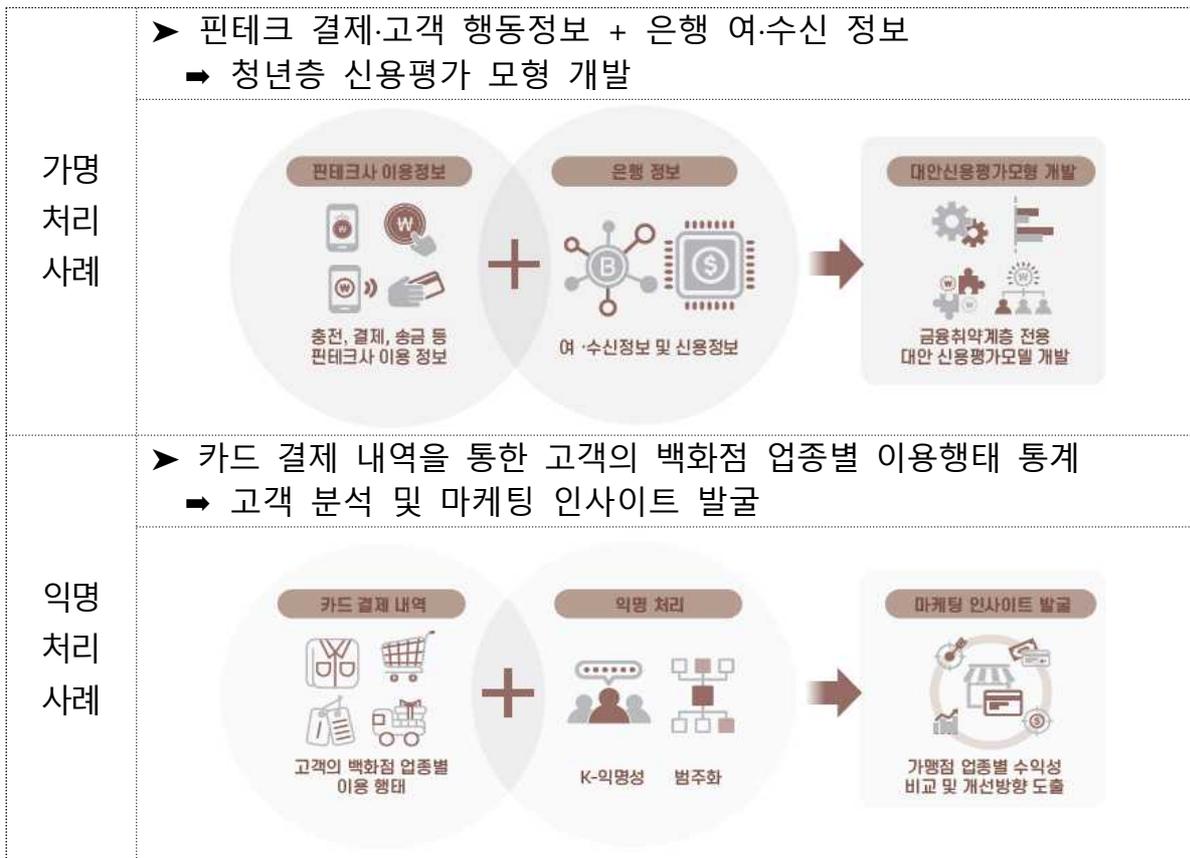
○ 개정된 안내서(별첨)는 금감원 홈페이지\* 등을 통해 배포('22.1.7일)

\* 금감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fss.or.kr>) - 업무자료 - 공통 - 개인정보보호

① **(절차 표준화)**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\* 등을 통일하였습니다.

\*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, 익명처리 적정성평가 신청서, 기초자료 작성방법, 결합 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확약서 등

② **(활용사례 반영)**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·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.



③ **(FAQ 신설)** 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(27건)를 반영하였습니다.

## 4 기대 효과

- ①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·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·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·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②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-비금융, 민간-공공 등 다분야·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.
- ③ 샘플링 결합 허용,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\*됩니다.

\* 현재 약 14~20일 정도 기간 소요 → 제도 개선시 약 10~15일 내외로 단축 가능

## 5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('22.1.7일~2.16일) 후 규제위,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※ 개정된 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는 '22.1.8일부터 적용

### < 안내사항 >

- ▶ 입법예고는 1.7일~2.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,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#### 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
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
- 전자우편 : creatcross@korea.kr    - 팩스 : 02-2100-2548

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### < 별첨 > 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